



'05년 LPG 소비자 신고 · 포상금 제도 도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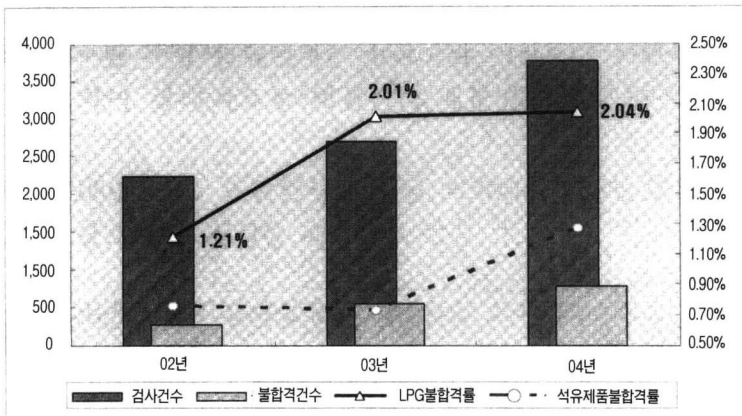
- '05년 LPG 품질검사 5,240회(충전소당 4회) 실시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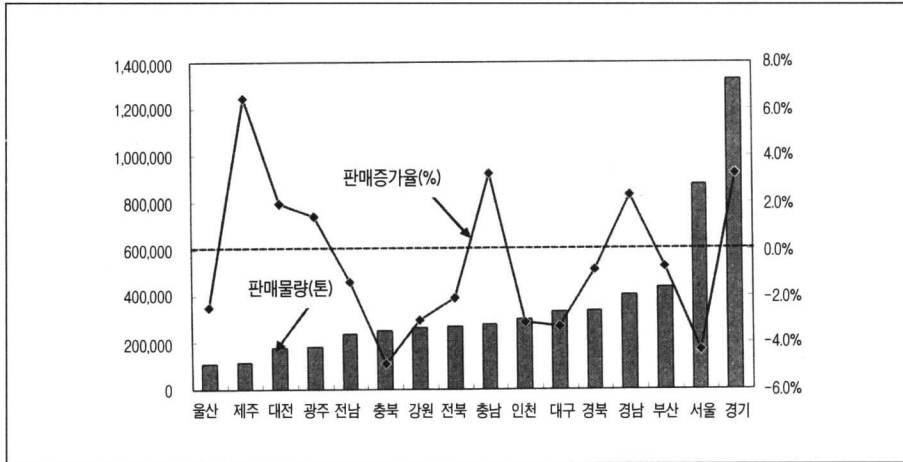
- 품질불량 LPG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, 품질검사 횟수를 대폭 늘리는 한편, 올 하반기부터 품질 불량 LPG를 신고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
- 또한, 삼진아웃제 도입 등 품질불량 LPG 취급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,
- 최근 3년간 품질검사실적을 기준으로 충전소 등급을 차등화하여 품질불량 LPG 유통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

- 산업자원부는 2004년 전국 충전소 등을 중심으로한 공급 및 유통단계 LPG 품질 검사결과 4,191건중 77건이 불합격 판정을 받아 품질위반 LPG 유통이 전년대비 0.1%p 증가했다고 발표하였음
- * 불합격건수/검사건수 : ('03) 54건/3,105건 1.7% → ('04) 77건/4,191건 1.8%
- 공급단계 불합격 LPG는 한 건도 없으며,
- 유통단계 불합격률은 2.04%로 석유제품

<LPG 유통단계 품질검사 추이>

(단위:건수)





불합격률 1.27%(78,059건중 989건)보다 0.77%p 높게 나타남

전소 등급을 차등화하여 품질불량 LPG 취급가능업소를 중점관리하고

○지역별로는

- 광주·울산·제주에서 위반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
- 인천·대구·전남·강원 등 6개 지역은 평균 불합격률 2.0%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됨

○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석유품질검사소에 “LPG 소비자 신고센터”를 신설하여 소비자 신고위주의 품질검사를 확대하고, 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

○또한, 삼진아웃제 도입 등 석유사업법상 품질위반 처분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처벌기준을 마련하고

□ 이와 같이 품질위반 LPG의 증가는

- ① 부탄과 프로판의 특소세 등 세액 차이 확대에 따른 위반업소 증가
- ② 판매물량이 감소한 충전소의 경영악화로 인한 품질불량 LPG 취급 증가
- ③ 프로판 혼합시 얻어지는 세금차의 이익보다 위반시 부과되는 벌칙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

○불합격제품 적출률이 높은 충전소, 품질 문제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및 주말, 공휴일 등 품질관리가 취약한 시간대의 품질검사를 강화하여 품질불량 LPG 유통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임

□ 따라서 05년 LPG 품질검사는 전년 계획 대비 73.5% 증가한 5,240회(충전소당 4회)를 실시할 예정이며,

○최근 3년간 품질검사실적을 기준으로 총

참고

1. 연도별 LPG 품질검사 현황
2. 지역별 LPG 유통단계 품질위반 현황('04)
3. 연도별 프로판 및 부탄 세금 추이
4. 품질의무 위반시 처벌기준 비교

〈 LPG 품질검사 현황 〉

(단위:건수)

	2002년			2003년			2004년		
	검사	불합격	%	검사	불합격	%	검사	불합격	%
공급단계	275	-	0.0%	412	-	0.0%	416	-	0.0%
유통단계	2,226	27	1.21%	2,693	54	2.01%	3,775	77	2.04%
계	2,501	27	1.10%	3,105	54	1.70%	4,191	77	1.80%

〈 지역별 LPG 유통단계 품질 위반 현황 ('04) 〉

지역	총전소(개)	검사현황			
		검사(건)	합격(건)	불합격	%
서울	70	128	127	1	0.8%
인천	51	149	142	7	4.7%
경기	233	774	760	14	1.8%
강원	88	258	249	9	3.5%
부산	47	156	155	1	0.6%
울산	37	61	61	-	-
대구	38	138	132	6	4.3%
경북	130	408	403	5	1.2%
대전	37	79	78	1	1.3%
광주	31	71	71	-	-
충북	74	245	243	2	0.8%
충남	118	247	245	2	0.8%
전북	97	255	249	6	2.4%
전남	103	347	333	14	4.0%
경남	126	406	397	9	2.2%
제주	30	53	53	-	-
계	1,310	3,775	3,698	77	2.0%

〈 연도별 프로판 및 부탄 세금 추이 〉

(단위 : 원/kg)

구	분	'00.7~	'01.7~	'02.7~	'03.7~	'04.7~
프로판(A)	특소세	40.00	40.00	40.00	40.00	40.00
	소계	40.00	150.13	259.40	370.96	483.08
부탄(B)	특소세	40.00	114.00	203.00	297.00	483.08
	교육세	-	17.10	30.45	44.55	57.30
	판매부과금	-	19.03	25.95	29.41	43.78
차이(B-A)	계	-	110.13	219.40	330.40	443.08
	(특소세)	(-)	(74.00)	(163.00)	(257.00)	(342.00)

*근거법 :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마목(프로판 40원), 바목(부탄 704원) 특별소비세법 부칙 제4항 (유류세율 적용 특례)

〈 품질의무 위반시 처벌기준 비교〉

	LPG	석유제품
①벌칙 (근거)	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(액법 제45조)	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(석사법 제34조)
②행정처분 (근거)	허가취소 또는 6월이내의 사업정지, 제한 (액법 제8조)(액법 시행규칙 제12조의2)	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6월이내의 사업정지 (석사법 제13조)(석사법 시행규칙 제11조)
-1회 위반시	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	사업정지 3월
-2회 위반시	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	사업정지 6월
-3회 위반시	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	등록취소
-4회 위반시	허가취소	-

*석유제품 행정처분 :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때 기준임